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508

발의일자 : 2024. 4. 15.
발 의 자 : 정재동, 장규권, 정순기, 엄샛별, 고성미 의원

1. 제안이유

가.「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 개정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결과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을 정비하고자 함.

나. 국민권익위원회「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거나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았을 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900,000원에서 1,200,000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20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개정(안 제2조)

나.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거나 징계의결을 받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제한 사항 신설 및 조문 정비(안 제7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0조 및 제10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나. 예산조치 : 48,000천원(400,000원×12개월×10명) 소요

다. 합　　의 :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 통보에 의함.

라. 기　　타

1) 현행 조례 : 별도 첨부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3) 입법예고 :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도 첨부

5)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900,000원”을 “1,200,000원”으로, “200,000원”을 “300,000원”으로 한다.

제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 또는「금천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경우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정활동비) ① (생 략)	제2조(의정활동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9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200,000원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기개시 또는 퇴직 등으로 의정활동비 지급기간이 1개월에 미달할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 1,200,000원---------- 300,000원--------.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7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 ---------- ---------- ---------- ------. <단서 삭제>
<신 설>	②「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경우
<신 설>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

	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 설>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현 행 조 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1.]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93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6., 2007.12.28., 2014.12.30., 2022.1.12., 2022.12.30.>

제2조(의정활동비)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 수집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4.12.30.>
②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9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200,000원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기개시 또는 퇴직 등으로 의정활동비 지급기간이 1개월에 미달할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1.31., 2004.1.20., 2014.12.30.>, <단서 신설 2017.10.13.>
③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26., 2014.12.30., 2022.1.12.>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2.28., 2008.12.24., 2009.1.15., 2014.12.30., 2019.1.16.>
③ 월정수당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26., 2014.12.30., 2022.1.12.>

제4조삭제 <2000.1.31.>

제5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지방의회 회의참석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단체 이외의 사설기관에서의 연수, 연찬회 참석자에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제6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00.01.31., 2014.12.30.>
②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01.31., 2014.12.30.>

제7조(여비지급의 기준)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제7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10.13.]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등 지급은 지방공무원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4.12.30., 2022.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6.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0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01.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4. 1. 1 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09.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05.10.14>
부칙(2005.10.1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제444호(2005. 9. 9) 시행당시 2005년 8월 5일부터 소급 적용한 제3조제2항의 회기수당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6.0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부칙(2007.12.28)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12.30)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38호, 201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08호, 2019.1.1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34호, 2022.1.12.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제3조제2항 관련)

연 도	월정수당 지급기준
2023년	연 3,122만원
2024년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
2025년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
2026년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966호, 2023. 12. 14., 일부개정]

제33조(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12. 14.>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2조(의정활동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 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인상 결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2024년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증가액이 총 4,800만원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의회사무국 의정팀 하성진
연 락 처	2627 - 2742